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국제이주기구(IOM)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IOM은 이주민을 위한 선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 사회가 이주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이주를 통한 사회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주자의 존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행일	2011년 7월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서관 1101호
발행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전 화	02-2183-0191
발행처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팩 스	02-2183-0192
지은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www.iom.or.kr
옮긴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Publis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1 1211 Geneva 19 Switzerland	1752 N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36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41 22 717 91 11 Fax: +41 22 798 61 50 E-mail: hq@iom.int Internet: http://www.iom.int	+1 202 862 1826 +1 202 862 1879 mrfwashington@iom.int

ISSN 978-92-9068-219-6
ISBN 978-92-9068-607-1
[©20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Design: Free Range Studio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이 출판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국제이주기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녹화, 사진촬영, 스캔 등을 통한 무단 복제, 자의적 유통 및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책을 펴내며

지난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ssion in Republic of Korea)는 IOM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경험을 정리 및 체계화한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이하 ‘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는 핸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이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안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 ‘직접지원’, ‘귀환과 재통합’, ‘아동’, ‘역량강화’, ‘정보 캠페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주제로 하여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대표부는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과 ‘직접지원’ 그리고 ‘귀환과 재통합’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가 부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지침서가 현장에서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의 홍수연, 김혜경, 이숙현, 이지연, 유미리, 윤보은, 방정원님이 번역에서 출판 준비까지의 전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 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인식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IOM의 사명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주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과정으로, 이주뿐만 아니라 성별, 노동, 인권,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IOM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아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IOM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에 따라 IOM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 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을 수 있다. 인신매매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만큼, 본 지침서는 광범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지는 않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미(美)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본 지침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이 책의 활용법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각기 다른 대상들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각 지침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여러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소개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의 각 부분은 구체적인 필요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중요한 용어는 용어 해설에 추가로 설명하였고, 출판물과 웹사이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참여자를 위해 참고문헌과 출처에 정리하였다.

인신매매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나므로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과정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직접지원 체계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관련된 모든 행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직접지원에 관한 본 지침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직접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다.

본 지침서는 직접지원에 대한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도구에서 평가 권고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 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원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지침서는 직접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담고 있다. 이 책이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에 기반을 둔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하나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책을 펴내며	ii
서문	iii
이 책의 활용법	iv

1장 : 기본 개념

• 당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자	1
•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1
•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
– 수단	2
– 행위	2
– 착취	4
•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4
–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4
– 격리 : 신분증명서류와 출입국 서류의 압수	5
– 언어적 · 사회적 격리	5
–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5
–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6
•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6
•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6
– 인신매매	6
– 이주자 밀입국 중개	8
•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9
•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10
•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10
• 난제에 대한 대응	10

2장 : 직접지원

• 직접지원이란?	15
• 직접지원의 원칙	15
•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17
• 직접지원의 구성 요소	19
– 피해자 식별	19
– 구출과 연계	20
– 심터와 회복	20
– 자발적 귀환	22
– 재통합	24

3장 : 시작하기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29
•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험 이해하기	29
– 피해자는 누구인가?	29
– 인신매매 피해자는 어떠한 학대를 당하는가?	30
– 결과	31
• 직접지원의 목적	32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	32
•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34
– 사례 관리	34
•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 도구	38
– 사례 관리 파일	38
– 보안과 위험 사정	39
• 특별 고려사항: 이동, 문화적 소통 능력, 언어와 통역사, 성별	40

4장 : 실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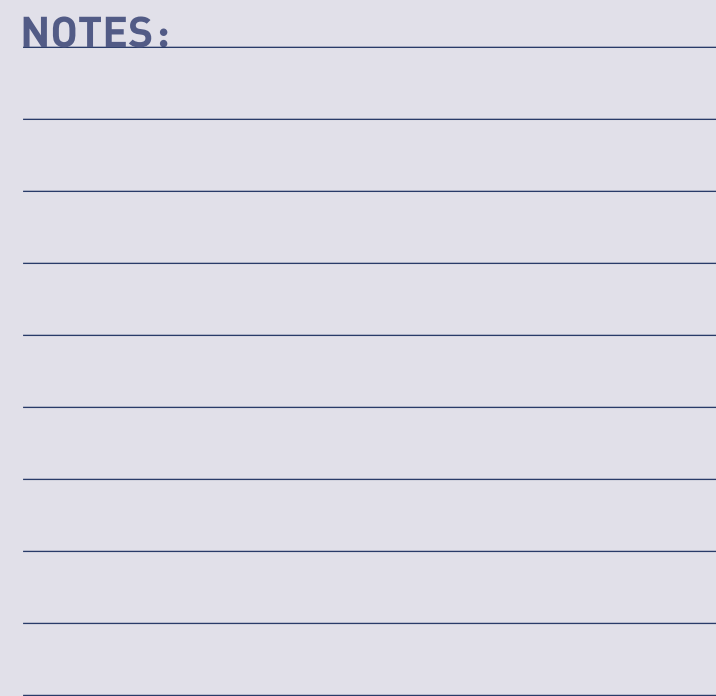
• 연계체계	45
• 연계체계의 목적	45
•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45
• 실무자에 대한 지원	50

5장 : 돌아보기

• 지표(Indicators)	53
– 지표란 무엇인가?	53
– 지표가 왜 중요한가?	53
–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54
• 직접지원 평가하기	54
•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57
• 언제 평가할 것인가?	57
• 결론	58

용어 해설	61
-------------	----

참고문헌과 출처	71
----------------	----



당신이 인신매매 피해자¹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당한다면 어떻게
 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며, 말도 통하지 않
 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나라에서 여권이나 신분증명서류와 돈이 없다면 어떻게할까?
 상품처럼 취급되어 사고 팔린다면 어떻게할까?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그 영향과 피해가 막대하다.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인신매매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에 국제사회가 인신매매의 정의를 상정하였지만, 인신매매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잘못된 통념도 널리 퍼져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인신매매는 어떻게 발생하며 인신매매된 사람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납치당한다.
일부는 강제로 끌려가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목적지에서 얻게 될 기회에 대한 거짓 약속에 속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도 한다.

잘못된 상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국경을 넘는다.

대개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국내 인신매매라고 한다.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신매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조직범죄의 수준, 법체계 및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낸다.

수단 - 협박, 무력, 강압, 납치, 사기, 기만

행위 -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

착취 -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장기적출

수단

인신매매는 흔히 기회에 대한 거짓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이 어떤 일에 고용될지는 알고 있으나 고용 조건은 알지 못한다. 특정 산업에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예, 농장 근로자나 외국 무용수 등)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기도 한다.

그밖의 경우, 피해자는 합법적인 일에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어 대개 식당에서 일하거나 사무직, 가사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무력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는 인신매매자도 있다.

수단과 관계없이 위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착취적인 조건에서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증명 서류나 출입국 서류를 압수당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폭력으로 위협당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한다.

행위

인신매매에 대한 국내법과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는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국경을 넘는 것만이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은 아니다. 인신매매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국경을 넘는 피해자에게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과 연관되어 단계별로 일어난다. 피해자는 출신국 내에서 이송, 인수되어 국외로 매매되기 전까지 은닉처에 기거하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경유국에서 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피해자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신체적·성적 학대 및 착취를 당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경우 과정에서 매매 혹은 재(再)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운송 방식이나 지리적 맥락에 따라 경우 과정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즉, 피해자는 단순히 동일한 국가 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바로 이송되기도 한다. (예, 항공을 통해 남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운송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다른 국가로 밀입국시킬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인신매매자가 건네 주거나 훔치거나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정식 비자 승인을 받은 공인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입국하기도 한다.

이동은 공공 혹은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육로, 해로, 또는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다른 국가로 밀입국하는 비정규 이주자가 포함된 집단에 속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선박이나 차량의 비밀 공간에 은닉될 수도 있고, 단순히 트럭이나 자동차의 뒤 칸에 숨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보통 국경 검문소나 공항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일원과 동행하게 된다. 신분증은 각 국경 검문소에 제시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항상 인신매매자가 소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흔히 저개발국에서 부유한 목적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칸국가에서 유럽연합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국가로, 중남부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반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관광지나 경제성장 중인 도시와 같은 곳으로 경로가 형성되기도 한다. 발칸국가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 평화유지군이나 민간 계약자(civil contractor)가 주둔한 곳에 특정한 노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언어적 요인이 반영되어 경로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으로 가는 브라질인 피해자는 종종 포르투갈을 거쳐 가는데, 이는 사용언어가 같아 인신매매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와 그들의 전 유럽 식민통치 국가들의 사례에서 처럼, 과거의 식민지 관계가 비자 조건에 영향을 미쳐 인신매매 경로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기만된 상태로 고향을 떠나게 되지만, 때때로 차후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밀입국자가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자에게 잡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해서 그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지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가장 인신매매에 취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자에게 유인되어 착취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의 경로는 한 가지 요소를 일관되게 반영하여 형성된다. 피해자들이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들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이 가장 큰 곳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상식

합법적 이주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으로 입국하기도 하지만, 법적 서류를 이용하거나 유효한 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피해자도 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인신매매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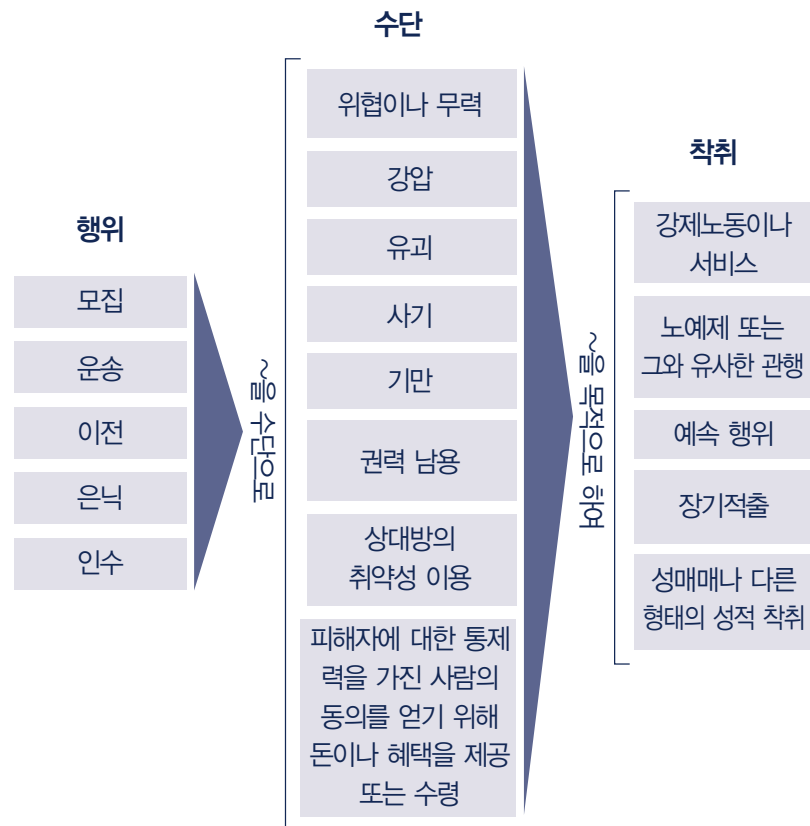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의 목적은 성적 착취이다.

일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하지만 강제노동이나(예, 공장이나 농장 등) 가사노동 또는 무장전투 등과 같은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착취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이다. 인신매매자는 오직 피해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송시킨다. 일부 인신매매자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무급 노동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득만을 취하기도 한다. 착취는 보통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에 시작된다.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강압기제를 사용한다. 인신매매자의 근본 목적은 피해자를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동시에 도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자는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다. 착취 유형에 따라 통제 방법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대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여행서류와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 인신매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목적국에서 벌게 될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미리 빌려준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채무로 인

한 인적 구속'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후에 피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의 실지출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액이다. 인신매매자는 대개 보다 강력한 인적 구속을 위해 이동경비에 자신의 중개수수료까지 더해 부채를 높인다. 극도로 높은 부채는 인신매매자에게 이득을 창출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매될 때 지불된 금액이 피해자 본인의 빚이 되면서 부채로 인한 인적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설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납치되어 운송되었다 할지라도, 인신매매자가 납치자에게 지불한 구매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착취되기도 한다.

격리 : 신분증명서류와 출입국 서류의 압수

인신매매자는 대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신분증명서류와 출입국 서류를 압수한다. 이는 피해자의 공식적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비정규 이주자 신분이 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찰이 억압적인 권력집단으로 인식되는 국가 출신이라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가는 즉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경찰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을 더욱 공고히 한다. 불행히도 인신매매자의 이러한 주장이 종종 들어맞곤 하는데, 이는 목적국에서 경찰이 발견하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중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즉각 국외로 출국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부패했고,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미소지와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다.

언어적 · 사회적 격리

피해자는 모국어로 소통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환경에서 감금당하기도 한다. 이는 인신매매자가 격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는 종종 인신매매 외부 환경과의 소통을 일제 차단당한다. (예,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심을 사용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구타, 강간, 감금하고, 오랜 기간 고립시키면서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고 심지어 고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대는 처벌로 가해지기도 하고, 명령을 위반할 시에 일어날 결과를 피해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

잘못된 상식

여성과 아동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많은 인신매매 연구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아동임을 밝혔지만,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성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남성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노동 착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과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때때로 피해자 한 명을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본보기로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 수치심은 강력한 통제 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을 판매하는 것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복종시킨다. 특정 문화권 출신의 피해자에게는 특유의 심리적 강압이 효과적이다. 특정 문화 집단에서의 의례, 의식이나 여타 상징적 행위(예, 부두교의식)는 해당 문화권 출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 인신매매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킨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피해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시되는 협박의 유형은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협박이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애칭이나 주소 등과 같이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협박은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지인들이 위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금전적 이득은 인신매매자와 관련된 범죄 조직망의 주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설사 방지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아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인신매매범이 한 사람을 매매하는 데 투입하는 초기 비용은 높지 않은 반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한 후 반복적으로 착취하여 얻는 이익은 매우 높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방식과 인신매매자가 사람을 매매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앞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인신매매

2000년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의정서를 통해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² 2000년 12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가 조인되었다. 이 의정서의 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 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 적출 등이 포함된다.
-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것은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 (d)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에 발효되어 현재 117개국이 서명국으로, 146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중요한 국제문서이다.³

본 의정서는 가입국가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인신매매의 범죄화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제공
- 피해자 귀환 지원
-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할 수 있는 이주 관리 (예, 국경 통제, 출입국 서류)
- 인신매매의 방지와 근절을 위한 훈련, 연구, 정보 제공
- (서명이나 비준과 관련된) 기술적 조항의 준수

이와 같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인신매매가 발생하기까지 수단, 행위, 착취의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신매매 행위는 앞서 언급된 수단을 통해서 발생하며, 행위와 수단 모두 착취적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깊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면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밀입국은 조직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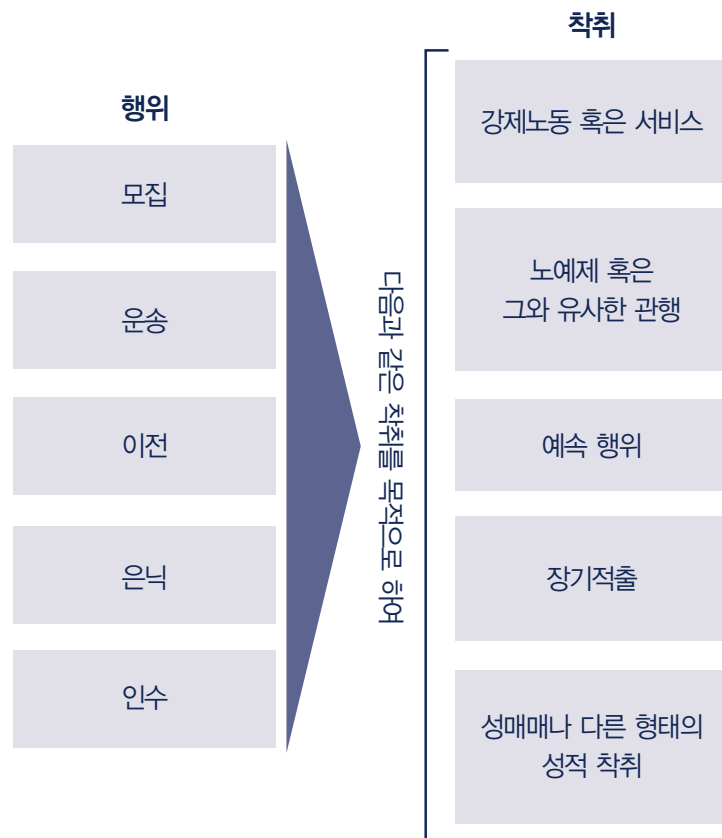
잘못된 상식

비정규(불법) 이주를 선택한 사람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밀입국을 선택한 사람이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비정규 입국자를 포함해 갓 도착한 이주자를 희생물로 삼는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사례로서 아동

인신매매방지협약은 세부규정 (c)항목에서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 이 항목에서는 인신매매의 성립 요건 중 수단의 필요성을 제외한다. 달리 말하면, 아동 인신매매는 “위협이나 무력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녀를 노상구결과 같은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설령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대한 각국의 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정서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자 밀입국 중개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인신매매를 이주자 밀입국 중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유엔은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대한 유엔 의정서(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에 조인하였다. 밀입국방지협약 3항은 밀입국 중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이주자 밀입국 중개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 불법 입국은 입국하는 국가의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은 인신매매와 밀입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과 관련된 수익사업이고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밀입국 중개는 불법 입국과 관련이 있다. 이때, 매매는 불법적인 국가 간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생한다. 따라서 밀입국 중개는 인신매매에 내재된 착취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신매매에서 매매되는 대상은 사람이고, 이는 이들의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착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체로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고 이동을 제한받으며 서류를 압수당한다. 이들은 국가 간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이주를 한다.

이 두 범죄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밀입국 중개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받으려 한다. 인신매매자는 기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을 착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 금전적 혹은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인신매매는 기회의 부족과 빈곤에 기인한다. 경제체제 전환의 실패, 약한 통치구조, 부정부패,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 또한 인신매매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가거나 전쟁, 박

잘못된 상식

교육을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에 노출된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다양한 사람이 매매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동유럽의 착취적 인신매매와 동남아의 아동 인신매매가 자주 보도되지만, 인신매매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와 함께 전 지구의 상호연결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국가는 국경 통제와 입국 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합법적 이주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적국에는 여전히 공식적·비공식적 영역에서 다양한 범주의 노동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서로 결합되어 비정규 이주와 인신매매의 발생률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 인권은 지속적으로 유린당한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위협, 구타, 강간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해자는 대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적인 이주 지위로 인하여 당국에서 추방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 또한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피해자가 겪었던 학대와 관련된 신체적·심리적 결과 및 외상은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강요당했던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경험이 지역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의 귀환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재편입하는 것을 막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어떤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범죄 집단이 사람을 속이고, 모집하고, 운송하고, 착취하기 위해 해당 경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무기와 마약밀매,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신매매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만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 및 공공 부문의 불안정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난제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는 매년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⁴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입안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어려운 임무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1. 방지
- 2. 보호
- 3. 기소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응은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동시에, 지역적인 맥락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신매매자는 이주 동향을 파악하여 잠재적으로 착취가 가능한 이주 집단을 물색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의 특수한 기제와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지 활동은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출신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유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가를 거쳐가는 다양한 이주 집단들 중에 인신매매 집단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다. 목적국은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착취 상황을 검토하고, 이주자의 노동권 강화에 힘쓰며, 비정규 이주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적 필요(예, 쉼터,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음식과 의복)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사건을 다루면서 기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 즉, 피해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를 인신매매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낙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호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정치적·법적 환경 구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국 출신 피해자가 (특별한 경우 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적절한 법률 제정은 인신매매자 기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법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보호는 피해자의 지역사회 혹은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돕는 것, 즉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과 재통합을 포함한다.

인신매매자의 기소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안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인신매매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국가는 인신매매자의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범죄의 초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목적국의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결일 뿐이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가 긴밀히 협



기억하세요

모든 나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인 지 또는 복합적 성격의 국가인지를 막론하고 인신매매 문제에 취약하다.

력하여 인신매매 기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다음의 주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 중심 관점
- 성 인지적 대응
- 협동과 협력관계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법적인 틀을 강화하여 인신매매자를 기소하며, 나아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중심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관련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지만, 이는 전 지구 공동체가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IOM 2002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사진은 IOM 루마니아의 협력으로 템포 광고기획사(Tempo Advertising)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주 /

¹ '피해자'라는 단어의 사용이 취약성과 무력함을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때때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인신매매된 상태에서 당국뿐 아니라 인신매매자에게 좌지우지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현실을 기술하기 위해 본 지침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계속 취약하다던가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경멸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지침서의 목적에 맞게,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말은 인신매매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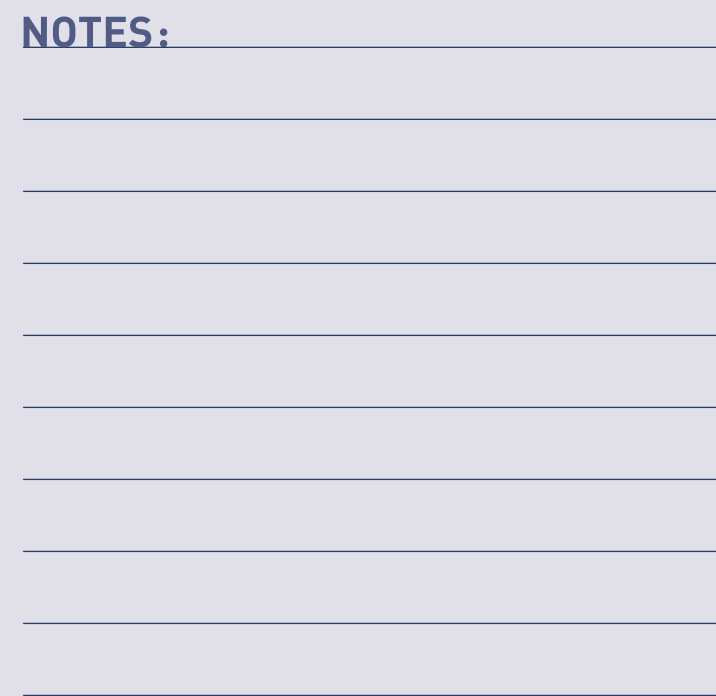
² 협약과 의정서의 공식문건은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³ 가장 최근의 정보는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TOC/signatures.html>을 참조

⁴ 인신매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추산도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600,000명에서 800,000명 가량의 사람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연간 백만 명의 아동이 인신매매된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인신매매를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마약밀매 수치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이란?

포괄적이고 원활하게 기능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종합적인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보호, 방지, 기소의 세 축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과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직접지원의 원칙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재통합이란 목적국이나 제3국, 또는 대안 공동체로의 통합뿐 아니라 귀환 이후 고국이나 고향으로의 재통합을 모두 포함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 피해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이다.

-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원 보호
- 엄격한 비밀보장 원칙 준수
- 피해자의 신원, 행방, 또는 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 보호

이러한 보호 기준을 준수할 책임은 피해자 식별부터 귀환과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정부, 비정부기구, 시민 사회단체 등)에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직접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⁵

인권 존중⁶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할 때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와 안전

피해자들은 기만당하여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인신매매되는 과정에서 불법 입국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을 범죄자가 아닌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유국과 목적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거주했거나 인신매매로 인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를 구금하거나 고소, 기소해서는 안 된다.”⁷

개별화된 처우와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과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개별성 또한 인정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화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과 참여

피해자는 제공받는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동의

피해자가 자신의 안녕과 미래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면한 상황과 유효한 선택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원 제공자는 모든 지원 과정에 있어 피해자가 선택 가능한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해주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보는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와 직접 의사소통할 수 없다면, 구두 또는 서면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사를 확보해야 한다.⁸

차별 금지

인신매매 피해자는 성별, 연령, 피부색, 사회적 계급,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또는 지위(피해자로서의 지위 포함)로 인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⁹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과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비밀보장과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와의 첫 만남부터 지원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정보와 사례 정보가 기밀로 보장될 것임을 피해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에는 피해자 본인 및 의료나 다른 분야의 지원 제공자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원 제공자는 반드시 모든 피해자 관련 정보를 책임 있게 다루고, 구체적인 필요에 의한 정보교환 원칙과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동의에 따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한다.¹⁰

아동의 최선의 이익¹¹

인신매매 피해아동에게는 아동의 특수한 권리, 욕구 및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모든 지원과 보호는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¹²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¹³

위에서 개괄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직접지원 체계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존엄성 존중:** 인신매매 피해자는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진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
- **신체적 안전과 보호:** 피해자는 위해, 협박, 위협에 대한 신체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인신매매자 기소를 위한 협조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사생활과 신원의 보호:** 피해자는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받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특히 개인적인 자료나 행방) 과정은 신원 보호를 위해 가장 엄격한 기밀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주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마다 역량과 자원이 다양하다.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범주의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어진 자원 내에서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 **안전하고 적합한 쉼터와 장기적으로 머물기에 적절한 거주지:** 피해자는 착취된 장소에서 구출된 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즉시 보내져야 한다.
- **신체적·심리적 의료 지원:**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되찾기 위해 포괄적이면서도 성별, 나이, 문화에 적합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의료, 사회, 법률 상담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법률 지원:** 피해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특히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자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 피해자의 견해와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에 대해 신속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 **법적 보호:** 사법당국과의 협조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피해자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 조치는 안전한 장소(쉼터) 제공과 법률 자문 및 신분 보호를 모두 혹은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는 거주권 발행을 포함하여 목적국 내에서 체류를 연장하고자 할 때 선택 가능한 사항에 대해 안내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출신국으로의 송환이나 제3국에서의 재정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대사 또는 영사를 만날 권리와 피해자의 출신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 이 권리는 피해자가 외국으로 인신매매 되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서류를 압수당한 경우, 피해자는 서류를 되찾거나 재발급받기 위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 **교육, 훈련 및 고용:** 피해자는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또는 인턴십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¹⁴

직접지원의 구성 요소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직접지원은 다음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 피해자 식별
2. 쉼터와 회복
3. 자발적 귀환
4. 재통합

피해자 식별

피해자 식별 과정의 목표는 인신매매방지정책서상의 정의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대책을 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착취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현지 상황과 법에 따라 이주국, 경찰 또는 기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시민이나 다른 피해자 등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긴급 상담전화(hotline)를 통해 착취적 환경으로부터 도망을 나온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종종 착취와 연관된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집, 음식점, 나이트클럽, 공장, 성매매 업소, 경호업체, 공장, 마사지 업소, 광산, 농장, 사택 등이 있다.¹⁵



기억하세요

인신매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자는 감히 있거나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럽거나 자신이 착취당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주의

피해자가 비정규 이주나 착취와 관련된 다른 범죄로 인해 체포되어 구금시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즉시 시설에서 분리시킨 후 안전하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환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사례

벨기에는 45일간의 숙고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미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주 비자를 발행해 주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구출과 연계

일단 인신매매 피해자가 확인되었다면, 피해자를 착취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즉시 구출하여 적합하고 안전하며 보안이 확실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피해자를 연계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자는 신속히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진단받아야 하며, 의료 조치가 시급한 피해자는 전문가에게 보내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료 및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 경험이 피해자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장에서 구출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어 착취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지는 것을 일컫는다. 즉, 구출은 '감금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스스로 탈출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경찰 등에 의해 확인되어 착취된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구출이라 지칭한다. 구출이라는 용어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무력함과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상황과 관련된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단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주민의 법적 지위가 초기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신매매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피해자로 확인되어 구출된 직후, 피해자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선택가능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숙고 기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남아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는 국가도 있다.¹⁶

쉼터와 회복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환경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쉼터 제공이란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인신매매 경험을 극복하고, 성공적 자활과 재통합 과정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쉼터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 유형, 자원, 역량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최소

한의 숙박, 식사, 기초적인 의료조치와 세면용품 등을 지원하지만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도 있다. 여기에는 심리사회적 지원, 법률 자문, 심층적인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전문의 진료,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쉼터가 없다면, 인신매매자가 접근할 수 없고 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택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수 쉼터가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수, 유효한 자원 및 쉼터의 지속 가능성과 같은 기준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와 같이 실무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의 쉼터, 호텔, 아파트 또는 기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보안이 잘 된 방 한 칸도 임시 쉼터로 사용될 수 있다.

목적국이나 경유국에 있는 쉼터는 대개 자발적 귀환을 위한 지원(이동 계획, 경호, 서류 준비)을 제공한다. 만약 피해자가 목적국에 남아있다면 임시 거주지 확보에 대한 지원과 재통합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출신국에 있는 쉼터는 보통 장기적인 의료 지원, 심리적 지원과 상담, 법적·사회적 지원과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재정적 지원, 고용 지원, 재통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시작되면, 피해자가 인신매매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안정과 안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정신적 외상은 피해자마다 그 양상이 다르며, 경험을 통해 습득한 생존기제 *survival mechanism*도 개인마다 다양하다. 초기 회복기는 장기적인 회복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성년자를 위한 거처¹⁷

- 미성년 피해자로 확인된 아동은 속히 안전한 거처로 이동시켜야 한다.
-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적합한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 아동 개인의 상황이 안전하고 적합하며, 이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일 경우)
- 아동 피해자를 절대 구금시설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
- 미성년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단체는 거주 지원을 위해 현지법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획득해야 한다.
- 아동과 부모의 신원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출신국과 목적국의 아동 보호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 피해자를 감옥이나 기타 구금 시설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세요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의 역량 강화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그들만의 강점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회복에 필요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국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도 귀환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자국에서 인신매매되었다고 해서 항상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사회나 국가로 귀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중요

피해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족의 반응과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는 것일 수 있다. 혹은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착취적인 상황 때문에, 또는 기대하였던 돈을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발적 귀환

귀환의 목표는 목적지에서부터 출신 지역까지 인신매매 피해자를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이동 혹은 이송시키는 것이다.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피해자의 가정환경이나 출신 지역을 평가하여 귀환이 적합한지(피해자를 귀환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례에 대한 분석(예를 들어 가족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는지의 여부), 가족과의 연락,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완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로 귀환하면 성공적인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피해자를 귀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인신매매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과 상황으로 다시 한 번 피해를 몰아넣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인신매매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출신지로 돌아갈 것을 절대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각 단체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귀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귀환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목적국에서의 거주나 제3국 정착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¹⁸

만일 귀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해당 국가에 남아있는 동안 어떤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출신국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관련국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의학적으로 안정을 찾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을 숙고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¹⁹

피해자의 귀환 과정에서 안전과 보안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점:

-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 간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며, 특히 외국인 피해자가 귀환할 때는 더욱 중요하다.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가 많으므로 귀환 과정을 밟기 전에 신분증명서류와 출입국 서류 준비를 우선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관련 서류 취득을 위해 해당 국가의 영사관이나 대사관과 협력해야 할 수도 있다.

- 피해자는 이미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동의 전 과정과 더불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 출신국, 목적국, 해당 지역사회, 그리고 필요할 경우 경유국 간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은 성공적인 귀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각 기관과 긴밀하게 구축한 협조체계는 피해자가 출신국이나 지역사회로 귀환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것이다.

- 피해자가 귀환할 경우, 전 과정 동안 피해자를 동행 혹은 경호하여 출발, 이동, 도착 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제복차림의 경호원과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항공편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출발지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때 뿐만 아니라 경유지와 도착지에서도 경호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²⁰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전 과정에 걸쳐 모든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따른 것으로 대개 연계 국가의 법, 정책 등에 구체화되어 있다.)
-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상담
- 가족의 지원(아동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 동의와 능력)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족 사정 또는 피 연계 국가의 재통합 체계를 고려한 적절한 지원 제공자 사정
- 연계 국가의 법에 따라 아동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단체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²¹ 가능하다면 아동이 연계되기 이전에 관련 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인신매매에 아동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사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억하세요

피해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재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통합

재통합 단계는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과정으로, 개인이 사회적·경제적·시민적·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²² 성공적인 재통합은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거나 재(再)인신매매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통합의 지름길이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개인적 기술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재통합의 핵심은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자기 권리에 대한 이해 및 주장
- 자기 개발과 기술 습득
- 행동 취하기 및 의사결정
-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선택사항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재통합 서비스는 국가별, 프로그램별로 다르며, 이 차이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조달의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²³

재통합 지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 서비스 지원 (상담 포함)
- 재정 지원
- 법적 지원
- 직업 교육 제공
- 교육 기회 제공
- 소자본 창업과 수익 사업 지원
- 직업 소개, 임금 보조금, 인턴십 프로그램
- 주거와 숙박 지원

피해자를 위한 재통합 과정을 개발할 때, 개인의 필요와 욕구뿐만 아니라 귀환국과 지역사회의 실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 서비스나 교육 기회는 출신국의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없거나, 자금 부족으로 제공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공되는 지원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회계사가 일반적인 직업 유형이 아닌 곳에서 회계사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²⁴

주 /

¹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에서 언급됨.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개입은 비정부기구, 다른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구성원의 협력 속에 적절히 개발될 수 있다.

² 위와 동일

³ 상세한 정보는 본 교육 지침서 시리즈 중 「귀환과 재통합」을 참조

⁴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중 가이드라인 6 참조

⁵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롯한 다른 국제 선언문에 의거하여 피해자들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⁶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67-127

⁷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중 7절 참조

⁸ 통역사 선정 시 특히 문화와 성별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서의 3장 언어와 통역사 부분을 참조

⁹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25-65;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중 가이드라인 6 참조

¹⁰ 피해자 본인이나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 다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기밀사항을 말할 수 있다.

¹¹ 일반적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취해진 모든 행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보호와 인권 존중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상세한 정보는 본 교육 지침서 시리즈 중 「아동」을 참조

¹²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중 7절 참조

¹³ 다음의 권리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사법을 위한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브뤼셀 선언(Brussels Declaration)」, 「보건과 인신매매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Public Health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및 기타 관련 국제 법률문서를 참조

¹⁴ 「브뤼셀 선언」 중 권고사항 15 참조

¹⁵ 피해자 식별에 관한 정보는 본 교육 지침서 시리즈 중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참조

¹⁶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의 7항은 각 국가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법적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¹⁷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129-207

¹⁸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중 11절과 가이드라인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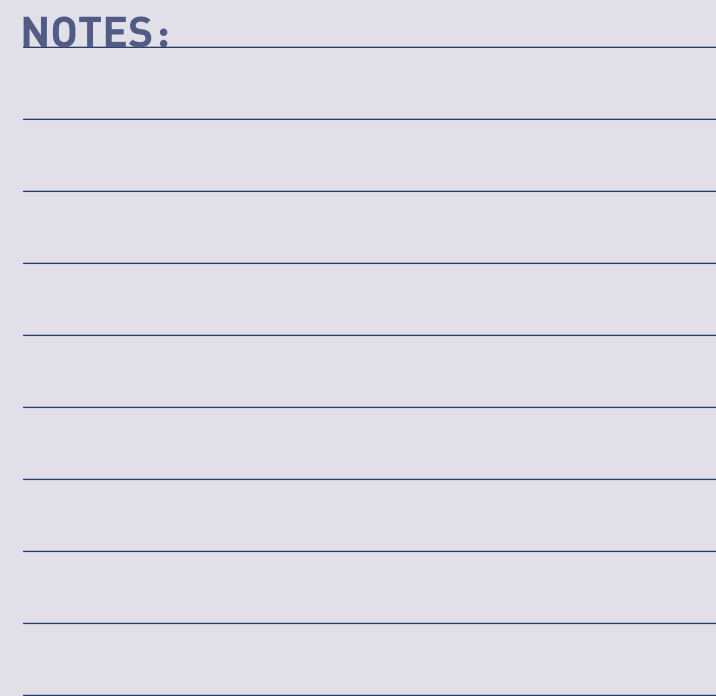
¹⁹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67-127

- 20 위와 동일. 보호자 미등반 미성년자에 관한 기타 관련 문서는 다음과 같다:
Separated Children in Europe Programme, Statement of Good Practice, 2000;
European Union, Council Resolution of 26 June 1997 on unaccompanied
minors who are nationals of third countries(97/C 221/03); UNICEF,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eastern Europe, 2003
- 21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의 역할, 책임 및 의무를 맡는다.
- 22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Good Practice Guide on the
Integration of Refugees in the European Union
<http://www.ecre.org/component/content/article/57-policy-papers/184-the-good-practice-guide-on-integration-of-refugees-in-european-union.html>
- 23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67-127
- 24 귀환과 재통합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본 교육 지침서 시리즈 중 『귀환과 재통합』
참조



NOTES:

[illegible]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방법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험 이해하기

피해자는 누구인가?

피해자는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 감정적 고통
- 경제적 손실이나 지속적인 기본 권리의 침해²

- 착취를 목적으로
- 위협, 무력,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등의 수단을 통해
-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된 사람



자원은 가능한 서비스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모든 종류의 지원이 제공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서의 목적은 제공된 정보를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에 최대한 적용시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직접 지원 체계를 구축할 때 보완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례

IOM 코소보 사무소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은 학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⁴

- 79%가 인신매매자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당했다.
- 60%가 인신매매자에 의해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
- 피해자 대다수가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동을 제한받았다. 피해자의 40%는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으며 44%는 감시자나 운송담당자의 동행 하에서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 절대적 다수가 음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았다.
- 피해자의 1/3 이상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며 대다수가 응급상황 발생 시에만 처치를 받았다.

인신매매가 기타 범죄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학대의 정도, 정신적 외상, 착취 등은 기타 범죄 피해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분 짓는 요소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어떠한 학대를 당하는가?³

인신매매에 있어, 학대는 피해자가 경험한 착취(성적 착취, 강제노동, 가사노예 등)의 유형과 연관된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착취는 일정 수준의 학대와 폭력을 동반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받는 학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와 폭력:** 매질, 고문, 음식이나 생활필수품의 박탈, 수면 방해
- **성적 학대:** 강간, 강요된 성적 행위(예, 강제노출), 성매매
- **심리적 학대와 폭력:** 끊임없는 거짓말, 조종, 기만, 배신, 협박, 공갈, 위협, 주변화, 고립
- **감금과 통제:** 부분적인 혹은 완전한 이동의 자유 제한, 감금, 지속적인 감시나 통제, 의료 시설 및 치료에의 접근 금지, 잦은 거주지 이전, 신분증명서류 갈취
- **사회적 고립:** 언어장벽, 타인과의 상호 교류 불허용,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단절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종종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약물과 알코올 섭취를 강요
- **착취:** 강제노동, 가사노예, 성매매, 기타 타인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
- **학대적인 노동 및 생활환경:** 위험하고 불결하며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 억류

인신매매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피해자 확인 및 지원 과정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상태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스트레스, 학대의 결과이지만 인신매매 발생 이전의 사건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인신매매되기 전부터 불행한 가정생활이나 사회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적·감정적 경험을 겪었거나 건강 상태가 허약했을 수도 있다.⁵ 이러한 내력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경험과 직접지원 과정에 반응하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착취당하기 이전에 인신매매 피해자는 이미 위협하거나 학대적인 상황에 여러 번 직면했을 수 있다. 인신매매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신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공포를 가중시킨다. 피해자는 위험한 이송 과정을 거치거나, 불법 입국과 체포, 그리고 위협과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착취에 앞서 여러번 매매되었거나 신분증명서류를 빼앗겼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학대나 폭력 등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강제와 학대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위협과 협박을 통한 공포감 조성, 거짓말, 기만, 감정적

조종 또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예측불가능하며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등이 이러한 수단에 해당된다. 인신매매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거나 복종하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한다. 이는 고문이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사용하는 방법들과 유사하다.

결과

인신매매의 위험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인신매매로 인한 외상과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자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⁶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착취적인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탈출해 안전한 곳에 있게 되더라도 스트레스와 외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비정규 이주자로 확인되거나 불법 이주 혐의로 체포되는 것(또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 것)
- 인신매매자에 맞서 형사소송에 협력하는 것
- 가족과 지역사회의 반응에 대한 우려
- 고립에 대한 공포와 지역사회와의 낙인
- 인신매매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 자신 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우려(구직 능력)

인신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는 성 매개성 질환, 감염성 질환, 심리적 외상과 심리적·감정적 학대 등을 들 수 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1) 개인의 내력, 2) 인신매매 과정에서의 열악한 의료 환경, 3) 인신매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심리적·성적 학대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 등이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주요 보건 영역은 정신건강, 생식건강 및 성 건강, 특정 감염성 질환(결핵, HIV/AIDS), 공중위생 및 보건의위생(치과 치료, 위장 질환, 옴, 이), 직업건강(신체적 상해·장애, 좌상, 열상, 착취와 학대로 인한 신경손상 및 골절), 영양결핍, 예방접종 등이다.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정신건강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이들은 배신감, 자존감 상실, 고립과 도피, 고독과 소외감과 같은 감정에서부터 정신착란, 무력감, 절망, 통제력 상실에 이르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피해자는 만성적 불안, 수면 문제, 악몽, 불면증, 피로를 비롯하여 기억상실, 해리, 방향감각 상실,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충격과 공포로 인해 고통 받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은 기억을 방해할 수 있다. 만약 인신매매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진술을 바꾼다 해도, 이것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억 문제와 관련해서 인내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기억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초기 진술을 변경하고 이미 진술한 내용에 상세히 덧붙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⁷





사례

IOM 인도네시아 의료 회복 센터 –
2005년 3월~2006년 4월

인신매매 피해자의 96%가 우울증, 불안, 약물의존, 자살충동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서 잠깐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정해진 공식은 없다. 다시 말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지원 방법이나 사전에 계획된 지원 해결책은 없다.

직접지원의 목적

직접지원의 목적은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필요와 바람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인신매매 경험이 개인의 안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다차원적이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이용해 살아갈 수 있다. 직접지원 과정의 핵심은 역량강화이다. 보안, 숙박, 음식, 의복, 의료 지원 및 능력 개발이 피해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요소들이다. 지원 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인신매매 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체 지원 과정을 완료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⁸

지원 제공자의 태도와 접근 방식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은 지원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긍정적인 만남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만남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절망감, 비난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⁹

인신매매 피해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를 위한 일상적인 소통과 지원은 반드시 다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외상의 반복을 막는다.
- 반드시 피해자의 신분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항상 동의를 구한다.
- 피해자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고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며 스스로 비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님을 재확인시킨다.
- 좋은 관찰자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급격하게 불안해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다시 진행이 가능할 때까지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결한다.

피해자 존중

- 모든 피해자를 동등하게 대한다.
-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 개개인의 특성과 각기 다른 필요, 우려, 소망을 존중한다.
- 특별히 유리한 답이나 반응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킨다.
- 피해자의 신체적·감정적 상태와 체력을 고려한다.
- 피해자를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원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피해자의 연령, 문화, 종교, 성별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한다.
-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원을 제공한다.

전문적으로 행동할 것

- 존중과 공감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유지한다.
-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여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행동한다.
-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집중한다.
- 감정적 개입을 균형 있게 조절한다. 세심하게 반응하되 지나친 감정적 개입은 삼가도록 한다.
-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사례 정보를 준비한다. 필요할 경우 통역사나 동료를 대동한다.
- 지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소통

- 말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통한다. 적절한 몸동작, 얼굴 표정, 목소리 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체 언어와 목소리 톤에 관심을 가진다.
-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의 반응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주의 깊고 능동적인 태도로 듣는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표정 혹은 제스처로(예, 고개를 끄덕거린다.)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있음을 계속하여 표현한다.
- 정보를 제공할 때는 피해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대화를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절대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
- 지원 절차, 선택 가능한 사항, 차후 단계, 지원 과정에서의 지원 제공자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대화 말미에 피해자가 말한 것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의도한 바가 지원 제공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주의

첫 접촉은 개별 지원기관이 착취적인 상황을 벗어난 피해자를 만나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일컫는다. 이는 피해자를 식별하는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 식별 단계부터, 혹은 그 이후 단계부터 참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법 집행기관이 피해자를 식별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례 관리⁹

사례 관리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일련의 인터뷰, 결정, 상담, 그리고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활동 등을 포함한 단계별 과정이 수반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례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신매매 결과로부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¹¹ 사례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피해자와의 첫 접촉

피해자와의 첫 접촉은 지원 과정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1단계 지원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소진, 착란, 해리, 두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접지원을 제공할 때는 피해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이 진술한 내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면 인터뷰를 연기하도록 한다.

첫 접촉이 이루어질 때, 지원 제공자는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방해받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대략 한 시간 정도)을 확보하도록 한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인터뷰 진행자와 통역사를 정할 때에는 나이, 성별, 종교,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¹²

첫 접촉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잠재적인 피해자와의 라포 rapport 형성 및 신뢰 구축
-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
- 향후 지원에 대한 초기 정보 제공
- 피해자의 동의 확보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 장소 선택

만남은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하면 피해자와 상담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만남의 장소가 법 집행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보안이 문제가 될 때에는 유일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 몇 가지 물건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되도록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베개, 편안한 의자, 음료 등)

→ 자기소개 그리고 본인의 책임에 대한 설명

→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며 편안한 분위기 조성

-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묻는다.
-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킨다.
- 음료나 화장실 이용 등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 피해자를 돕는 것이 목적임을 설명한다.
- 지금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예,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나요?”, “이 과정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등)
- (지원 제공자와 피해자의) 자리 배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 응급상황 대비

위험도가 높은 사례나 새로운 보안 문제로 인해 의료 및 심리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리적 응급상황의 예¹³

- 자살 위험: 피해자가 자해욕구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 피해자가 타인에 대한 가해 욕구 혹은 가능성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피해자가 섬망¹⁴, 치매, 급성 정신증적 삽화^{acute psychotic episodes}와 같은 심각한 판단 장애와 위험 징후들을 보이는 경우

→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언어로 정보를 제공

피해자가 질문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가능한 지원과 선택사항,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결과에 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자가 심터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들의 권리와 책임, 심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및 일반 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를 준수하기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동의 확보¹⁵

이것은 의료검진, 인터뷰, 자발적 귀환 그리고 서류 공유를 포함한 지원 제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이다. 자신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일부 혹은 전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주지시킨다.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주저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도록 장려한다. 첫 접촉의 말미에 지원 과정의 다음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잠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피해자에게는 지원 과정과 피해자의 권리가 적힌 자료(피해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것)를 주는 것이 좋다.



기억하세요

초기 몇 차례의 만남에서 피해자는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혹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전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피해자의 필요가 분명해지면서 지원을 위한 전략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 피해자의 필요 평가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 피해자의 필요와 희망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 충족되어야 할 필요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의 필요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다양하고 선택가능한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피해자의 필요에 따른 지원

피해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3가지 범주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즉각적이고 긴급한 지원:** 피해자와의 첫 접촉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안 및 안전
 - 실제적 필요(음식, 음료, 의류)
 - 의료적 · 심리적 응급상황
 - 쉼터
 - 법적 지원
- **중기적 지원:** 일단 피해자가 안전하고 보안이 잘된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우선시 한다.
 -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의료 지원
 - 서류 작업 지원
 - 가해자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의 법적 지원이나 법 집행 시의 법적 지원
 - 고국이나 고향에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장기적 지원:** 장기적 지원의 목적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피해자의 필요, 바람, 소망 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
 - 거주 지원
 - 지속적인 법적 지원(필요할 경우)
 - 재정 지원
 - 교육 지원
 - 직업 교육 또는 소득 활동 및 취업 지원
 - 가족 지원

일부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긴급한 필요에 대처한 후에,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필

요가 변화할 수 있다. 지원 제공자는 지원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필요를 평가하여 모니터링 해야 한다.

둘 이상의 기관이나 지원 제공자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지원 제공자에 의해 필요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통합을 위해 피해자를 다른 나라로 연계할 경우, 목적국의 연계기관이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고 이후 출신국의 피 연계기관이 계속해서 이를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 연계기관은 피해자 재통합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과 구조를 알 수 있다.

3단계 : 지원 제공을 위한 실행 계획

실행 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 우선순위 선정
가장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외의 문제들은 나중에 고려한다.
- 목표와 목적 수립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도록 돕는다.
- 필요한 지원, 단계 및 소요기간 확인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한다.
- 책임 분배
필요한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 과정의 각 부분을 담당할 개인이나 기관을 결정한다.

지원 제공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지원 과정을 개발한다. 형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안, 의료 지원, 법적 지원, 쉼터 제공, 귀환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의 기본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최상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4단계 : 실행 계획 이행

일단 계획이 공식화되었으면 필요하다고 확인된 활동을 시작한다. 인권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위해, 지원 과정은 앞서 설명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지원 과정 동안 새로운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행 계획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요

피해자에게 현실가능성이 없는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사건을 사정할 때 피해자의 필요와 현실에 대한 균형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는 피해자의 회복과 재통합과정에 해가 될 수 있다.

5단계 : 평가¹⁶

평가는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지원이 조정될 수 있게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자, 심리학자, 법률가 등을 포함한 지원 제공자 및 지원기관들은 피해자 식별에서부터 귀환과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각 사례의 전체 진행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 도구**사례 관리 파일¹⁷**

지원 단계를 문서화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모든 피해자에 관한 사례 관리 파일을 만들도록 한다.

사례 관리 파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이고 표준적이며 기능적인 방식으로 피해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 과정을 개발하기 위함
-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평가를 문서화하며, 과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제공되는 지원을 명시하기 위함
- 사례 평가와 후속 모니터링을 위한 참고 기록을 제공하기 위함

직접지원을 제공할 때 보통 여러 지원기관이 동시에 관여하므로, 지원 과정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지원기관은 동일한 사례 파일을 공유해야 한다. 서류 공유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원기관에는 지원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다른 지역사회나 국가로 돌아갈 경우, 기존의 지원기관은 피해자가 돌아가기 이전에 귀환 후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게 될 기관에 사례 파일을 넘겨주어야 한다.

사례 관리 파일은 지원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례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가족의 위치, 근로 및 교육 경험)
- 학대 등 피해자의 인신매매 경험에 대한 상세한 기술
- 보안과 위험 사정(다음 내용 참조)
- 지원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서면 동의서
- 피해자의 신체, 의료 및 심리 상태와 이와 관련된 필요
- 지원 내용과 목표, 지원 우선순위, 피해자의 필요와 바람, 요청된 서비스와 일 정표

- 지원기관은 제공된 지원, 현재의 회복, 귀환 및 재통합 상황과 이후 요구되는 후속 지원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지원 내용을 검토 및 평가해야 한다. (5장 평가 참조)

보안과 위험 사정¹⁸

인신매매가 가진 범죄의 속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직접지원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안은 지원 과정 동안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피해자 및 지원 제공자가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수준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각 상황마다 보안 위험에 관한 신중한 사정이 요구되며, 위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최상의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 사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 착취국에서의 일반적인 위험 사정
- 위험 사정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사정

착취국에서의 일반적인 위험 사정

위험 사정의 첫 단계는 관련 국가(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음의 위험 지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 착취국에서의 인신매매 정도와 영향
- 이주 경로와 관련된 국가의 특성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또는 복합적 성격의 국가
- 지원이 필요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
- 범죄조직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 그리고 피해자 또는 지원 제공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 현지 사법당국의 역량과 지원 제공자와의 관계
- 내부의 부패 정도와 이러한 부패가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인신매매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사법 처리 및 결과
-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수준

위험 사정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일반적인 위험 사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안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월별로 위험 사정을 갱신하고 점검해야 한다. 고위험 시기인 경우, 위험 사정은 일일 또는 주간 기준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위험 사정을 실시하고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 관리 계획은 위험 사정을 통해 새로운 위험 요소나 보안 위험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 기관이 어떻게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중요**

보안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될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보안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사례에 대해 위험사정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전 지원 과정에 걸쳐 보안과 위험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기관 단위(전체적)와 개인별 사례 단위(구체적)로 실시되어야 한다.



주의

‘아동’이라는 용어는(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합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위험 사정

정기적인 검토는 위험 사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지원 제공자에게 위험 요소가 발생하거나 증가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각 사건은 다른 난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와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건은 다음을 포함한다.

- 피해자가 직접지원 제공자에게 처음으로 연계된 시점, 특히 쉼터 입소나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가 지원 과정에 포함된 경우
- 쉼터에 있는 피해자가 병원, 진료소 방문 혹은 기타 지원을 받기 위해 쉼터 외부로 계획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 인신매매자에 대한 증언 등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피해자나 지원 제공자가 이동하는 경우, 출신국, 목적국 또는 양쪽 모두에서 인신매매자가 이러한 이동 경로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
-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원 제공자를 위협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 예를 들어 익명의 협박전화나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가 반복된다거나, 모르는 사람이나 차량이 쉼터 밖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피해자나 지원 제공자를 공공연하게 미행하는 경우

특별 고려사항 : 아동, 문화적 소통 능력, 언어와 통역사, 성별

아동 지원하기¹⁹

인신매매는 특히 아동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아동기에 발생한 학대와 외상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을 지원할 때에는 국제법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및 필요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²⁰

-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아동의 의견 존중
- 아동 인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기
-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지 제공
- 후견인 임명의 필요성
- 가족 찾기²¹를 포함한 귀환 및 재통합 지원

문화적 소통 능력²²

문화적 소통 능력은 ‘다양한 문화 간의 소통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지식, 태도, 기술의 복합적인 융합’으로 정의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타인의 행동과 신념에 반영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지식
- 자신의 문화적 특성, 편견과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정치사회적·환경적·경제적 맥락이 구체적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²³

피해자들은 직접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보다 다양한 문화적(인종, 민족, 사회, 종교, 언어) 배경을 갖고 있다. 지원 제공자는 문화적 배경이 개인의 행동과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태도, 실행 및 절차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 결여는 지원 제공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문화와 언어에 친숙한 문화 중재자(cultural mediator)의 활용은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언어와 통역사²⁴

통역사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려는 사람을 잇는 중요한 연결자이다. 통역사는 누군가의 말을 통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와 개념을 전달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통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그 지원관계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반면 통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통역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통역사 또한 자신만의 생각, 의견, 편견, 친구,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타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역사를 고용할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적절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경우, 통역사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통역사가 인신매매 피해자, 피해자 가족, 실무자 혹은 지원 과정 전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문화적 성)²⁵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문화적 성)는 보건과 의료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성 인지적 접근은 인권 인지적 접근으로서 반(反)차별 원칙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옹호한다.²⁶ 여자 혹은 남자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의미하는 젠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보건 증진 활동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성, 여성, 남자 아동 및 여자 아동 피해자가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방식은 개별적이지만, 피해자 본인, 착취자 및 지원 제공자의 성별에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필요가 다를 수 있다.



고려사항

피해자를 지나치게 동정하는 통역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꾸밀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피해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폄하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로 인한(신체적·정신적·의학적) 외상과 학대를 경험한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경우,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해야 한다. 아동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피해자는 직접지원 제공자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 여성, 여자 청소년 및 아동은 여성 의료 실무자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아닐지라도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성이 동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성과 남자 청소년들도 남성 의료 실무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

¹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http://www.m-w.com>

² 1985년 11월 29일 40/34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OHCHR)의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사법을 위한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을 참조
<http://www.unrol.org/file/BASIC~4.PDF>

³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는 다양한 종류의 학대 및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

⁴ 보다 자세한 정보는 IOM 코소보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iomkosovo.org>

⁵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Mental Health Aspect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Training Manual and a Set of Minimum Standards, IOM, Budapest, 2004

⁶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D. Tudorache, “General considerations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trafficking phenomenon”, Psychosocial Notebook, Vol. 4, IOM, 2004, p.22

⁷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209-303

⁸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165-167; C. Zimmerman, C. Watts, WHO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Interviewing Trafficked Women, WHO, 2003

⁹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협력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본 교육 지침서 시리즈 중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 참조

¹⁰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p.67-207; A. Barath, “Case Management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The Mental Health Aspects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Training Manual and a Set of Minimum Standards, IOM, Budapest, 2004

¹¹ 위와 동일

¹² (역자주) 위의 책, 「부록 I: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참조

¹³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p.209-303

¹⁴ (역자주) 섬망의 일반적인 증상은 치매와 비슷하나 치매와 달리 급성으로 발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¹⁵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p.342-364; 「부록 I: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인터뷰 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참조

¹⁶ 평가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본 책의 5장 참조

¹⁷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209-303

¹⁸ 위의 책, p.11-65

¹⁹ 유니세프(UNICEF)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 IOM에서 출판한 다음의 단행본 참조.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hildren, IOM, Geneva, 2006

²⁰ 유엔인신매매방지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²¹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아동』,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hildren, IOM, Genev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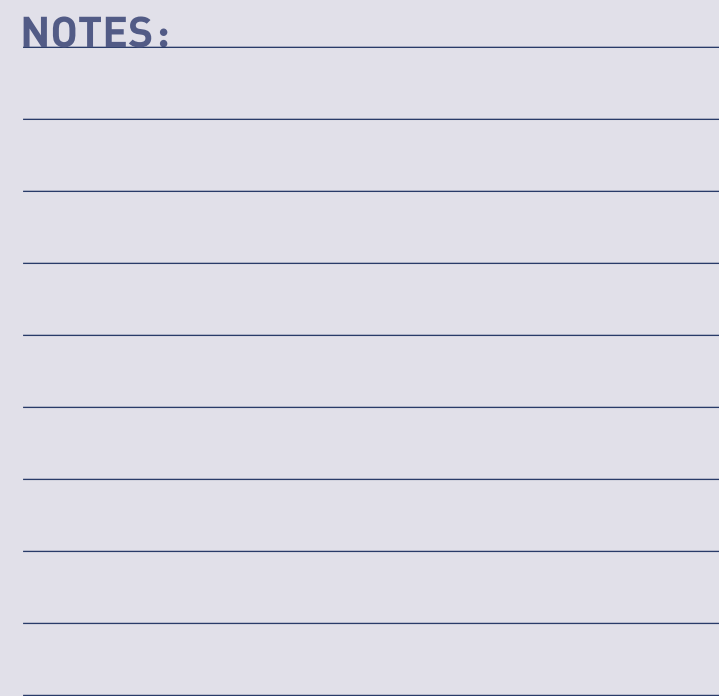
²²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p.209-303

²³ J.G. Lipson, et al., Promoting cultural competence in and through nursing education: A critical review and comprehensive plan for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Academy of Nursing, 1995

²⁴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p.341-364

²⁵ 위의 책, p.209-303

²⁶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ender policy. Integrating Gender Perspectives in the Work of WHO, 2002.
<http://www.who.int/gender/mainstreaming/ENGwhole.pdf>



PART FOUR BRINGING YOUR IDEA TO LIFE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필요는 다각적이므로 지원체계도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계체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지원 제공자와 이들의 개별 능력을 연결하는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모든 지원 단계에 걸쳐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

연계체계의 목적

이는 공동으로 합의된 목표, 기준 및 절차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사법당국, 사회 복지기관, 시민단체, 지원 제공자, 국제기구 등과 같은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¹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사회복지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련 당국에 지원과 지지를 요청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어떤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우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 만약 지역사회가 이제 막 구체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연계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이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안정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살펴 보도록 한다.

1단계 : 인신매매 상황평가 및 실무자 측면에서의 기존 대응 분석

첫 번째 단계는 착취국에서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절차에서는 국내 인신매매 현상에 대한 구체적 상황, 특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 평가에서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 인신매매 상황이 어떠한가?
- 어떤 종류의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가? (성적 착취, 강제노동 등)
 - 국제적인가, 국내적인가, 혹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가?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혹은 복합적 성격의 국가인가?
- 인신매매에 관한 어떠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 만약 가능하다면,
 -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피해자는 누구인가?
 - 피해자의 인적사항(연령, 성별, 출신 등)은 어떠한가?
 - 어떻게 인신매매를 당했는가?

두 번째 절차에서는 취할 수 있는 자원이나 실시중인 대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기존의 대응, 특히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원과 함께 지원기관의 효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한다. 이는 지원기관이 여건 상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서비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나 자원과 전문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일례로 지원기관이나 지원 제공자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도 인신매매 피해자와는 일해 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자원, 대책 및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 누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가?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의식 수준, 능력,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필요한 점과 부족한 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 서비스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는가? 긴급상담전화는 있는가? 만약 있다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은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가?
- 활용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연계체계는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현재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률체계는 어떠한가? 만약 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집

행되고 있는가? 현지의 법 구조가 인신매매 경험으로 인해 불법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지원을 돕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이러한 평가는 기존의 연계체계를 분석하거나 신규 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할 것이다.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권고안을 발전시킬 때에는 다음 핵심 영역이 고려되어야 한다.

- 누가 개입할 것인가
- 각자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을 것인가
- 연계기관과 지원 제공자는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의사소통, 정보 공유, 서비스 실행을 조율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때, 기존의 절차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관과 자원을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아본다.

2단계 : 지원기관 선정

위에서 언급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면 필요한 지원 제공을 담당할 지원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지원기관 내에서 지원 조정을 최우선으로 담당할 총책임자를(대리인과 함께)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기관 내에 다른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있더라도 조정을 담당할 총책임자가 있어야 전체적인 지원 과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주요 연계 관련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나 활동그룹(이하 연계그룹)을 구성할 것을 권한다. 서로 공조하고, 목표,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고 합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연계체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 복지부
- 비정부기구
- 국제기구
- 민간기관
- 정부 당국
- 검찰과 경찰
- 사법부
- 대사관과 영사관

3단계 : 목표와 목적 수립

연계그룹은 평가의 결과와 권고안에 따라 연계체계의 궁극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에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성공적인 연계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서는 연계그룹이 초기부터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존중하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단계 : 역할 및 책임 분배

일단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 단계에서 각각의 사명과 능력에 따라 개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

- 피해자가 확인됐을 때 어떤 지원기관이 첫 접촉 지점이 되는가?
- 어떤 지원기관이 피해자를 적합한 쉼터로 이동시킬 것인가?
- 누가 보안을 제공할 것인가?
- 어떤 지원기관이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담당할 것인가?
- 어떤 지원기관이 회복 및 재통합 단계에서 의료 지원, 쉼터(긴급, 단기, 장기 및 장기), 상담, 법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서류 준비는 어디서 지원할 것인가?
- 만약 피해자가 해당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누가 도울 것인가?
- 어떤 지원기관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담당할 것인가?

모든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책임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서명을 받는 것이 좋다.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관련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같은 협력 계약을 통해 공식화할 수 있다. 양해각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협력의 기본 원칙과 개별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체결되어야 한다. 만약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양해각서를 최종 체결해야 한다.

5단계 : 쉼터를 비롯한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자원 확인과 배분

이용 가능하거나 필요한 재정적·인적·기술적 자원(예, 장비 또는 전문가)을 확인하도록 한다. 연계체계의 각 요소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계 관련 기관들은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초기 평가 및 분석에서 확인된 바를 반영하여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연계체계는 대개 쉼터, 긴급 상담전화, 원조 활동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축에 중점을 둔다.

다음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서비스 영역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a) **목표와 목적:** 방대한 연계체계의 틀 안에서 특정 지원 서비스 구축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b) **지원 대상 집단:** 인신매매 피해자는 남성이나 여성 혹은 아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해야 하는 지원과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특정 서비스가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부 범주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결정한다.

c) **서비스를 관리할 지원기관 확인:** 서비스 구축의 주요 책임을 맡을 적절한 지원기관을 정하도록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계획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d) **실무자 확보:** 일단 지원기관이 정해지면 담당 실무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보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실무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안에 발생 가능한 위험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준수해야 할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신규 실무자를 고용할 때에는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 **절차, 규정 및 행동강령:** 서비스 전달 절차, 프로토콜, 실무자 및 입소자(쉼터의 경우) 행동강령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기타 조직을 결정한다. 이미 정해진 기구가 있다면 내부 문서에 추가한다.

특히 쉼터의 경우 보안 수단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쉼터에 입소, 거주 및 퇴소하는 피해자와 쉼터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보안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실무자와 입소자가 그 대응절차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f) **최종 계약:** 전반적인 연계체계와 새로운 서비스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한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비공식적으로는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이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g) **한계:** 협력과 대화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공조 과정은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협력 및 공조의 결여, 정치적 우선순위 및 의제의 충돌, 서로 다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대표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인적 갈등과 지원기관에 대한 고정관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의

쉼터나 다른 지원 서비스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동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연계체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략을 권고한다.

- 각자의 위치가 달라 의견일치가 어렵더라도 열린 대화를 통한 의견교환을 지속한다.
- 기능적이고 종합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및 기관 수준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관련 당사자가 합의하여 문서로 공식화된 각자의 목표와 기능, 역할과 책임 분담 및 운영 절차를 확인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²

6단계 : 역량강화 및 교육³

연계체계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사회복지사, 상담사, 의사, 심리학자, 경찰관 등)에게는 ① 피해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기술적·심리적 요령, ②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③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 등에 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특화된 교육은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전문성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설정된 목표에 대한 진행 정도와 성공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는 연계체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으며, 체계에 변화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는 5장 참조)

실무자에 대한 지원⁴

지원 제공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의 특수한 성격, 보안에 대한 우려,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에 대한 부담, 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 한정된 영향력에 대한 무력감, 지원 가능한 자원의 제한 등이 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실무자는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소진은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을 장기간 겪으면서 일어나는 신체적·감정적·정신적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 소진은 점진적 과정이며 다음의 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체적 증상: 피로, 체력 고갈, 탈진, 수면장애, 두통, 감기, 독감
- 감정적 증상: 과민, 불안, 죄책감, 우울증, 무력감
- 행동상의 증상: 공격적이거나 냉담한 태도, 비관주의, 냉소주의
- 업무상의 증상: 업무 수행 능력저하, 잦은 결근, 지각
- 대인 관련 증상: 집중력 장애와 의사소통 능력 저하, 입소자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

그러므로 (실무자가 수행하는) 개인적 차원과 (관리자가 수행하는) 기관 차원에서 소진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실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심리적 지원 및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제공
- 동료들 간의 상호 의지
- 업무 마감 후 나눈 시간 가지기
- 실무자의 발전과 팀 구축을 위한 활동 조직
- 사회 활동 일정 잡기
- 건강하고 협조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
- 업무 일정에 적절한 휴식과 휴가 등을 포함시키기

스트레스와 관련한 중요한 방지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실무자 전체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자와 관리자가 협력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지원 제공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 실무자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하며 격려, 조언,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실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와 직접 협력하는 개인은 건강한 생활습관(운동, 충분한 영양섭취, 휴식과 수면)을 가지고 최대한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실무자는 자신의 임무와 목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업무에 투여할 감정적 에너지를 균형있게 조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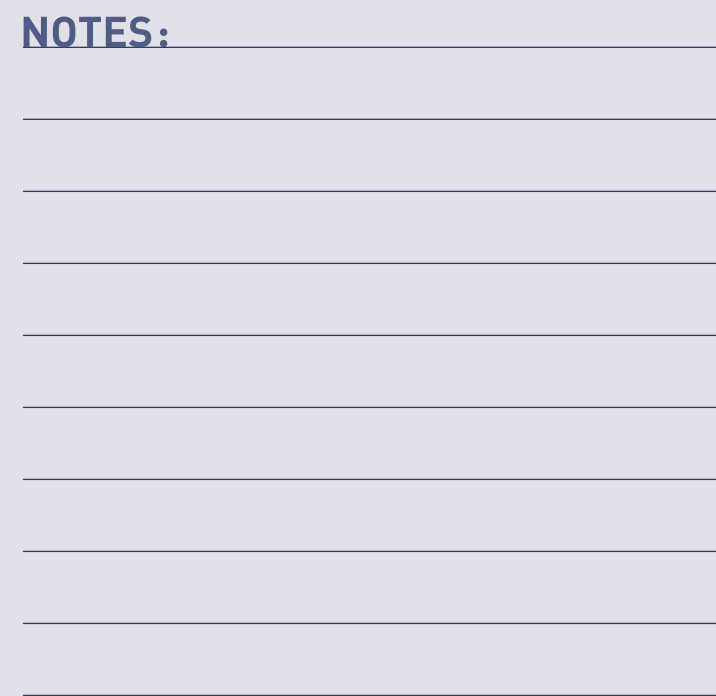
주 /

¹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따르면 광범위한 맥락에서 국가 연계 체계는 국가가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촉진에 대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협력적 틀이다.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OSCE), National Referral Mechanisms: Joining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Trafficked Persons: A Practical Handbook,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ODIHR), Warsaw, 2004, p.15

²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협력과 네트워크』,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ooperation and Networking, IOM, Geneva, 2006

³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역량 강화』,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apacity Building, IOM, Geneva, 2006

⁴ 국제이주기구(IOM),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2010, p.209-303



직접지원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보호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별 사례 및 전체적인 지원의 진행 상황을 측정,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표란 무엇인가?

성과 지표는 특히 개입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계획한 바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지표가 왜 중요한가?

또한 개입을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더욱 장려하는 등의 옹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늘어가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역량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동시에 지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양적·질적 정보는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입 계획과 지원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지표는 기관으로 하

여금 스스로 실행 결과를 측정해보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지표는 개입에 관련된 실행자, 수혜자, 기부자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

종종 지표를 결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표는 개입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생산된, 측정 가능한 직접적 결과물이다. 반면, 지표는 사업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개입의 목적과 예상결과 그리고 개입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선택될 수 있다. 이때, 지표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표는 취할 수 있는 정보, 역량과 자원, 적절한 검증 수단을 통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자들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들은 직접 기준 설정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점이나 외부 방해 요인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SMART)지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체적일 것(Specific): 규모와 시간 면에서
- 측정 가능할 것(Measurable): 목표 실행 결과에 따른 변화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달성 가능할 것(Attainable): 지표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하고 접근 가능한 것
- 관련성이 있을 것(Relevant): 외부 요소의 영향보다는 개입의 영향을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 추적 가능할 것(Trackable): 지표는 현재 사용 가능하거나 사업 관리의 일부로 수집될 자료들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성 인지 지표를 위해 최소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직접지원 평가하기

지원 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접지원 단계 및 기관 단계에서의 초기 목표를 검토해야 한다.

직접지원 단계

인권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성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적인 재통합을 목표로,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돕는다.

기관 단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공조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이 목표들이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측정하도록 한다.

직접지원 단계

- **일반적 단계:** 국가 내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양적으로 성공 수준을 평가한다. (예, 피해자로 식별되어 지원을 받은 자의 수)
- **개인적 단계:** 개별 피해자의 진전 수준을 평가한다. (제공된 지원의 질과 재통합 성공률)

기관 단계

- 직접지원 체계가 지원기관 및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이나 지표를 점검한다.

직접지원 단계

일반적 단계(양적)

- 피해자의 수
 - 착취적 상황에서 구출된 피해자의 수
 -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피해자의 수
 - 연계되었거나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수
 - 재통합된 피해자의 수
- 성공률
 - 확인된 피해자 중 지원을 받은 자의 비율
 - 지원받은 피해자 중 재통합에 성공한 자의 비율
-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의 유형

일반적 단계(질적)

- 지원의 수준
 - 제공된 지원의 질 -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더 용이하다.
- 재(再)인신매매 방지
 - 인신매매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감소시킨다. (예, 교육, 상담, 훈련, 고용 기회를 향상시킨다.)



중요

모든 피해자가 성공적으로 재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공받는 지원때문인 아닌, 경제적 상황, 가족 환경, 건강 문제 등 피해자의 여러 개인적 요소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



주의

상담은 지원을 받는 동안 재통합 단계에서, 또는 방지 수단으로써 이주하기 전에 실시될 수 있다.

개인적 단계(피해자 한 명에게 제공된 구체적 지원에 대한 평가)

- 피해자가 외상으로부터 벗어났는지의 여부
- 목표 설정에 따른 피해자의 재통합 정도(가능하면 단기, 중기, 장기로 평가)
- 피해자의 필요 평가를 기준으로 한 지원 제공의 성공 수준
- 지원 기간 동안 피해자의 사생활 및 사례 정보가 기밀로 보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성공률/성공 수준

기관 단계

- 인권에 기반을 두며, 지속 가능하고 공조의 원칙을 존중하는 연계체계가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대표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는지의 여부
- 피해자 확인, 구출, 보호, 지원(재통합 포함)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최종 수립 및 적절한 실행
-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실행 계획이나 정책의 최종 설립 및 적절한 실행
-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인신매매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불법 입국, 불법 체류, 문서 위조, 불법 고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점과 보호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치를 명시하는 인신매매 관련법의 초안 작성 및 입법화

기관 단계에서 지원 과정을 평가하고 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연계체계, 표준운영절차, 실행 계획, 입법안과 같은 공식적인 도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측면인 집행과 실행 수준이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진행 과정이 측정되면,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이 효과가 있었나?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어떠한 현실적 문제점이나 장애물에 부딪혔는가?
- a) 개별 지원 과정과 b) 전반적인 직접지원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점은 무엇인가?
-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목적 달성에 어떤 요인들이 기여하거나 또는 방해했는가?
-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지원 과정 또는 체계 향상을 위해 권고할 만한 사항은 무엇인가?

상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원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가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수혜자:** 피해자는 지원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도록 고안된 양식을 사용하여 지원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쉼터를 떠나거나 지원 과정을 종결할 때(목적국 또는 출신국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예, 일대일 대화나 대표 집단을 통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 지원이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는 피해자의 피드백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 **지원 제공기관:** 모든 지원 제공기관은 지속적인 자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교류와 지원 내용을 매일 검토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평가를 통해 얻은 교훈은 전체적인 기관 차원의 평가에 통합되어야 한다. 직접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우수한 실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만일 여러 기관이 지원 제공에 참여한다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평가해야 한다.
- **외부 평가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예, 사회복지사, 보건 전문가, 인신매매 전문가), 조사기관, 평가 전문가 등이 외부 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외부 평가자는 보통 지원 과정 및 체계와 관련해 보다 중립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언제 평가할 것인가?

평가는 주요 지원 단계가 마무리될 때, 예를 들어 피해자가 쉼터를 떠날 때, 일정 기간의 재통합 지원이 이루어진 후, 혹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평가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단체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는 매달 있을 수 있지만 외부 평가는 일 년에 한 번 실시될 수 있다.

평가는 지원 과정(한 가지 지원 사례와 전체 지원체계를 지칭) 종료 시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원 과정을 통해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는 개선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체계의 구성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의

정부 역시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 외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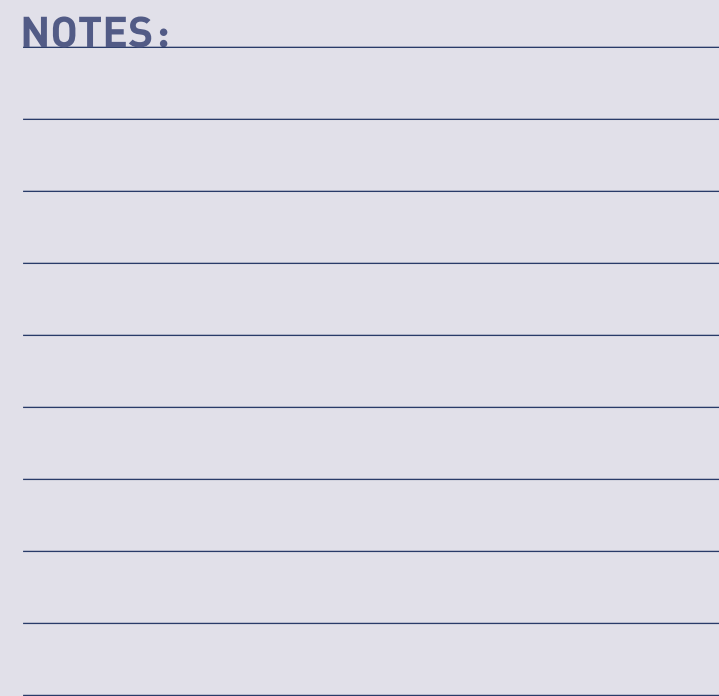
직접지원은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핵심 부분이다. 본 지침서에 제시된 기본 개념이 맞춤형 지원 제공과 직접지원 체계의 확립 및 유지를 향한 행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지침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직접지원 체계 개발을 위해 제공되었다.



NOTES:

주 /

¹ 지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리즈의 귀환과 재통합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표를 참조 바란다.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귀환과 재통합』,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Return and Reintegration, IOM, 20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andbook on Performance Indicators for Counter-Trafficking Projects, 2008



가사노예 (Domestic Servitude)

관련 용어: 착취, 강제노동, 채무노예

“아동의 매매나 인신매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농노제, 강제노동과 같은 노예제나 그와 유사한 모든 형태의 관행으로서 환경적으로나 그 성격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무력분쟁을 위한 강제징병, 포르노나 포르노적 행위를 통한 생산 활동, 성매매에 아동을 이용, 알선, 제공하는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 협약에서 정의한 마약의 생산과 밀매와 같은 활동에 아동을 이용, 알선,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제3조)

전문 참조: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관련 용어: 아동, 아동노동, 소년병, 착취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위협하여 강요하는 것²
관련 용어: 통제,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려

비자발적 결혼을 지칭한다. 1962년 「결혼, 결혼의 최소연령 및 결혼신고 동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sent to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convention.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cedaw.htm>

관련 용어: 착취, 성적 착취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1930년 「강제노동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Labour)」 제2조) 1957년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Abolition of Forced Labor)」에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동의어: 강제노동(Compulsory Labor)

전문 참조: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05>

관련 용어: 착취

강제징병 (Forced Military Conscription)

전시 상황의 민간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4차 제네바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에 의하면 “점령군은 피보호자에게 자국의 전투 또는 비전투 군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전문 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관련 용어: 소년병, 착취

격리 (Isolation)

격리는 인신매매자가 통제와 강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분증명서류나 출입국 서류 제거 및 언어적·사회적 고립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통제, 강압, 신분증명서류, 출입국 서류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이주자가 거쳐 가는 국가, 이주 흐름이 통과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관련 용어: 출신국, 목적국

국내 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귀환 (Return)

귀환은 본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동하거나 수용국/경유국/목적국으로부터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귀환의 방식에 따라 자발적 귀환, 강제적 귀환, 지원 귀환, 즉각적 귀환으로 나눌 수 있다. 혹은 난민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과 같이 귀환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

기소 (Prosecution)

피고인을 심리하기 위한 형사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기소는 법률과 정책 강화, 범죄 처벌 강화, 역량강화, 국내 및 국가 간 협력(예, 비정부기구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방지, 보호

납치 (Kidnapping)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유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감금하는 것으로, 보통 납치된 피해 당사자나 그 외 제3자에게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형사법 처벌 조항에 의거하지만, 해적 행위와 같은 특수한 납치 사건은 국제법을 따른다.⁵

관련 용어: 유괴, 수단(강제적인 경우)

노예제 (Slavery)

“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일부 혹은 모든 권력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행사되는 상태나 조건”(1953년 의정서로 개정된 1926년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제1조) 노예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강압과 통제를 가하거나,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그만 두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예, 전통적인 노예제, 채무노동, 농노제, 강제노동,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노예제 등)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ry.htm>

관련 용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이주자가 이동하여 도착하는 국가, 이주 흐름의 목적지가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수용국(Receiving Country)

관련 용어: 출신국, 경유국

미성년자 (Minor)

자국법에 따라 성인보다 연령이 낮으며,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칭한다.⁶

관련 용어: 아동

밀입국 중개자 (Smuggler (of Migrants))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된 국경 너머로 사람들을 불법 이송시키는 중개자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방지 (Prevention)

기존의 또는 발생할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방지 행위를 가리킨다.⁷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방지는 정보와 의식증진 활동, 연구, 세미나, 교육, 협력과(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기소, 보호

보호 (Protection)

보호는 위협에 처한 개인이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이 권리를 지니며,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당국에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보호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피해자 보호에는 쉼터 제공, 의료적·심리적 지원, 비자 획득 지원,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안전 보장, 국내의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방지, 기소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망명 신청을 거절당한 자, 강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환경 이주자, 불법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입국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조된 문서로 입국하였거나 비자 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한다. (World Migration, 2003; Skeldon, 2000; Irregular Migration, 1999)⁹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규제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이동이다.¹⁰ 비정규 이주에 대해 명확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수용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의 정의는 자국으로의 불법 입국, 자국 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노동으로서, 이는 해당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주, 또는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증이나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이주자를 의미한다. 송출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는 유효한 여권이나 출입국 서류없이 국경을 지나거나 정부의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¹¹

동의어: 불법 이주, 밀입국(Clandestine Migration)

반의어: 정규 이주, 합법적 이주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성 인지 지표 (Gender-Sensitive Indicators)

특정 환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난 성 평등에 관련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를 나타내주어 성 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관련 용어: 지표, 성과 지표

성과 지표 (Performance Indicators)

개입의 결과로 생긴 변화를 또는 계획한 바와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지표

관련 용어: 성 인지 지표, 지표

성매매 (Prostitution)

성적 행위를 전제로 배우자나 파트너 외의 타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¹²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매매의 맥락에서 성적 착취는 성매매, 포르노, 선정적인 춤, 섹스관광, 강제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성, 여성, 아동 모두가 될 수 있다. 성적 착취는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93년 「여성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다.

전문 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

관련 용어: 착취

소년병 (Child Soldier)

다수의 국제협약은 아동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1977년 부속의정서와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에 따르면, 무력 분쟁에 모집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15세이다.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제3조에 의해 아동은 무력분쟁 지역에 “강제 혹은 의무적으로 모집”되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는다. 나아가 200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

지역에 아동을 관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전문 참조:
<http://www.icrc.org/eng/war-and-law/treaties-customary-law/geneva-conventions/index.jsp>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crc-conflict.htm>
관련 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소진 (Burnout)
정서적 소모가 심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육체적·감정적·정신적 피로 상태

수단 (Means)
인신매매를 성립시키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전적으로 기만적인 수단,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수단 그리고 강제적 수단(유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인신매매, 행위, 착취

수단, 강제적인 경우 (Means, Forcible)
강제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끌고 간다.
동의어: 유괴
관련 용어: 유괴, 납치

수단,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Means, Partia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수단, 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Means, Fu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는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고, 인신매매자의 본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속게 된다.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Identity Document)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관련 용어: 여권, 출입국 서류

아동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조) 국제법상 아동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한 대상으로서,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전문참조: <http://www.unicef.org/crc/>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아동노동 (Child Labour)
“아동노동은 아동의 교육적·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유해한 노동이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해야 한다. 아동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에 저해되거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

전문 참조:
<http://www.unicef.org/crc/>
관련 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양자 간 합의한 조건과 상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법적 문서로 각각의 요구사항과 책임을 포함한다.¹³

역량강화 (Empowerment)
법적 권한이나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자아실현을 돕고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것¹⁴

연계체계 (Referral System)
모든 지원 단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원조, 지원, 보호를 조정하는 시스템

외상 (Trauma)
외부 행위자에 의해 가해진 신체적 손상, 심각한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 또는 신체적 상처로부터 비롯된 마음이나 행동의 혼란 상태, 감정적인 동요¹⁵

유괴 (Abduction)
무력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끌어내는 행위¹⁶
관련 용어: 납치, 수단(강제적인 경우)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이다. 이주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만 범죄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주자 밀입국 중개를 주도하는 조직범죄 집단의 문제를 다룬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지칭한다. 이동 기간이나 내용,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난민, 유민, 실향민, 경제적 이주민의 이주가 있다.¹⁷
관련 용어: 비정규 이주, 정규 이주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출신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 온 사람”을 지칭한다. (1990년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제2조)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관련 용어: 이주

이주자 밀입국 중개 (Smuggling of Migrants)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기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에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제3조)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관련 용어: 비정규 이주,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인권 (Human Rights)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수용되는 가치에 의거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이익을 가리킨다.¹⁸ 이러한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담겨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른 조약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전문 참조: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기, 권력의 남용,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는 상호연결 되어있는 행위, 수단, 목적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용당하면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다룬다. 이주자는 종종 감금되거나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성매매나 그 밖의 위험한 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수입은 조직범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동의어: 팔레르모 의정서

관련 용어: 인신매매,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s of Trafficking)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인 사람(남성, 여성, 아동)

동의어: 인신매매된 자

관련 용어: 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자 (Trafficker (of Humans))

경제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기, 강압 및 다른 종류의 착취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운반하는 자를 지칭한다. 인신매매자의 의도는 사람을 착취하여 이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관련 용어: 인신매매

재통합 (Reintegration)

특정한 개인을 어떠한 집단이나 과정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주자가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사회에 재편입되는 과정¹⁹

재통합 (경제적) (Reintegration (economic))

이주자의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사회의 경제체제로의 재편입을 지칭하며, 이주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²⁰

재통합 (문화적) (Reintegration (cultural))

귀환 이주자의 입장에서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사회의 가치, 생활방식, 언어, 도덕규범, 사상, 전통에 대한 재적응²¹

재통합 (사회적) (Reintegration (social))

이주자가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로 재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인적 관계망 형성(친구, 친척, 이웃)을 포함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발전(연합단체, 자조집단, 기타 여러 단체)을 의미하기도 한다.²²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법적으로 인정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주

동의어: 합법적 이주, 준법 이주(Orderly Migration)

반의어: 비정규 이주

관련 용어: 이주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중앙 조직을 통해 계획되고 통제되는 광범위한 범죄 활동²³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인신매매

지표 (Indicator)

지표는 성과, 변화, 또는 실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양적 또는 질적 기준이다. 시행, 서비스, 절차의 특성과 이행 정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지표는 실행을 측정, 감시, 평가, 개선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성 인지 지표, 성과 지표

직접지원 (Direct Assistance)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범주의 활동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직접지원의 목표는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착취 (Exploitation)

사물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²⁴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자는 오로지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착취해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무급 노동 혹은 무료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강제노동, 가사노예, 성적 착취, 수단, 행위

채무노예 (Indebted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란 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적인 노동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²⁵ 이러한 노예상태는 때때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채무관계를 이용하는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의 결과로 나타난다.

관련 용어: 착취,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가사노예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Debt Bondage)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하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기로 약속할 때 발생하는 지위 또는 상황을 지칭한다. 서비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할 때에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일의 성격이 모호하다.” (1956년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제1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관련 용어: 통제, 강압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돈세탁, 부정부패, 조사나 기소의 방해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연루된 활동 전반과 주요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세부 영역으로서 특정한 고려사항(인신매매, 이주자 밀입국)을 두 개의 보충 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이주자의 출신 국가, 이주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송출국(Source Country)

관련 용어: 목적국, 경유국

출입국 서류 (Travel Documents)

타국 입국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여권, 비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출입국 서류이다. 특정한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는 나라도 있다.

관련 용어: 신분증명서류

통제 (Control)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제한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²⁶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예, 신분증명서류 혹은 출입국 서류 압수), 공포심 유발 및 심리적·신체적 폭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관련 용어: 강압,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통상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지침이나 단계²⁷

피해자 (Victim)

어떠한 행위자나 폭력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피해자는 사고나 범죄 등을 겪으면서 상해를 입고, 파괴되고, 희생된다. 또한 억압과 고통과 학대의 대상이 되고, 기만당한다.²⁸

행위, 동원 (Mobilization)

인신매매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동은 국제적(둘 이상의 국가)으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즉, 국내 인신매매) 발생할 수 있다.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용어: 수단, 착취, 인신매매

SMART 분석 (SMART Analysis)

잠재적 지표를 분석하는 기준을 지칭한다. 지표가 구체적인지/작은 단위인지, 측정 가능한지, 달성 가능한지/성취 가능한지, 현실적인지/관련성이 있는지, 추적 가능한지/시기적절한지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 /

¹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available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accessed October 2004.

² Garner, B.(ed.), *Black’s law dictionary*(7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1999, (see further as Black’s law dictionary).

³ Adapted from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op.cit., p.54.

⁴ Merriam-Webster Online.

⁵ Feinrider, M., Kidnapping,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5, p.355.

⁶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Geneva, 2004, p.42.

⁷ Merriam-Webster Online.

⁸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Francoise Bouchet-Saulni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⁹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84th Session of the Council*, available online at <http://www.iom.int/jahia/Jahia/about-iom/governing-bodies/council/84th-session>

¹⁰ Ghosh, B. “Huddled Masses and Uncertain Shores, Insight into Irregular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artinus Nijhoff 1998, p.1.

¹¹ Perruchoud, R., “Migration Termin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and Law Courses*, Budapest, Hungary, 1998.

¹²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http://www.britannica.com>, accessed June 2006.

¹³ *Investopedia.com*. from Dictionary.com website: <http://dictionary.reference.com/search?r=2&q=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accessed September, 2006.

¹⁴ Merriam-Webster Online, accessed September 2006.

¹⁵ 위와 동일

¹⁶ Garner, B.(ed.), *Black’s law dictionary*(7th Edition), West Group, St. Paul, 1999, (see further as Black’s law dictionary).

¹⁷ Merriam-Webster Online.

¹⁸ *Migration Terminology: Concepts and Definitions*, Working Draft, IOM.

¹⁹ Adapted from IOM,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 op.cit., p.54.

²⁰ 위와 동일

²¹ 위와 동일

²² 위와 동일

²³ Black’s law dic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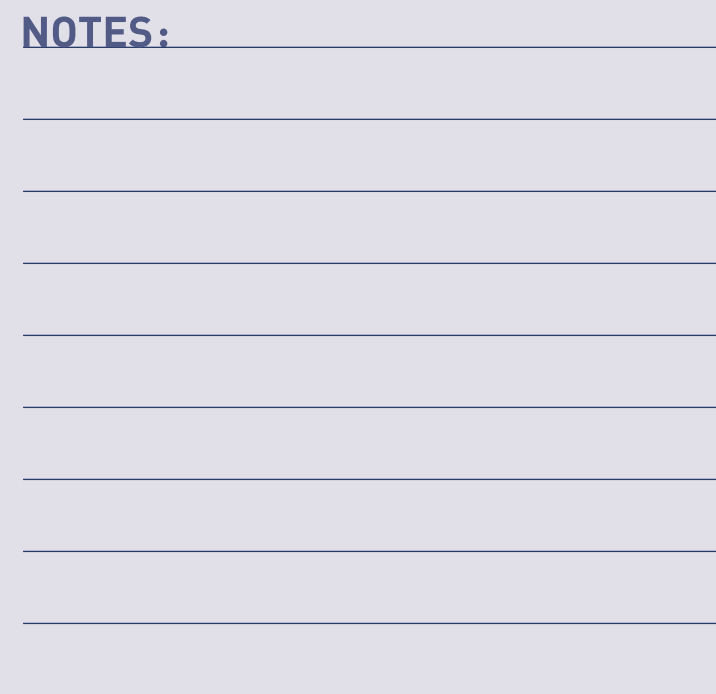
²⁴ 위와 동일

²⁵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op. cit.

²⁶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www.m-w.com, accessed October 2004 (see further as Merriam-Webster Online).

²⁷ *Dictionary.com Unabridged* (v1.0.1). [http://dictionary.reference.com/search?q=Standard Operation Procedure](http://dictionary.reference.com/search?q=Standard+Operation+Procedure), accessed September 2006.

²⁸ Merriam-Webster Online, accessed August 2006.



서적, 논문, 보고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 보고서와 인신매매 연구

-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 

- Counter–Trafficking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200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인신매매 현황, 2003
- First Annual Report on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 Eastern Europe, 2003
남동부 유럽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제1차 연간 보고서, 2003
- Irregular Migration and Trafficking in Women: The Case of Turkey, 2003
비정규 이주와 여성 인신매매: 터키의 사례, 2003
- Migración, Prostitución y trata de mujeres dominicanas en la Argentina, 2003
아르헨티나 내 도미니카공화국 여성들의 이주, 성매매 및 인신매매, 2003
- Protection Schemes for Victims of Trafficking in Selected EU Member Countries, Candidate and Third Countries, 2003
유럽연합 회원국과 후보국, 제3세계 국가에서 선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계획, 2003
- Trafficking in Persons – An Analysis of Afghanistan, 2003
인신매매 – 아프가니스탄 사례 분석, 2003
- Seduction, Sale and Slavery: Trafficking in Women &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in Southern Africa, 2003
유혹, 매매 그리고 노예: 남아프리카 지역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2003
- Return and Reintegration – Counter–Trafficking – Situation Report in Kosovo, 2002
귀환과 재통합 – 코소보 인신매매 방지 상황 보고서, 2002
- Trafficking in Unaccompanied Minors in the European Union, 2002
유럽연합의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2002
- Second Research Report on Third Country National Trafficking Victims in Albania, 2001
알바니아 내 제3국민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2차 조사 보고서, 2001
- Shattered Dreams: Report on Trafficking of Persons in Azerbaijan, 2002
깨어진 꿈: 아제르바이잔 인신매매 보고서, 2002
- Deceived Migrants from Tajikistan: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2001
타지키스탄에서 기만당한 이주자들: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rom the Republic of Armenia: A Study, 2001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 Balkans: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to, through and from the Balkan Region, 2001
발칸 국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2001
- Migrant Trafficking in Poland: Actors, Mechanism, Combating, 1999
폴란드의 이주자 인신매매, 1999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평가

- Information Campaign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 Cambodia, Final Evaluation, by Candice Sainsbury, August 2006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방지 정보 캠페인, 최종 평가, 2006
- Economic Rehabilitation for Survivors of Trafficking in India, IOM/Gol, by Lacey Ilene Ruben, July 2006
인도에 있는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경제적 재활, 2006

- Mass and Micro–Information Campaign Awareness Impact Assessment – Information Campaign to Combat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in Cambodia Project, Joint evaluation MOWA/IOM, March 2006
거시 및 미시적 정보 캠페인의 영향 평가 – 캄보디아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 정보 캠페인 프로젝트, MOWA/IOM의 공동 평가, 2006
- Evaluation of the IOM Assisted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of Ghanaian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for Labour Exploitation in Yeji Fishing Communities, Republic of Ghana, IOM, by Sciences Po – Institut d’ Etudes Politiques de Paris, June 2005
예지 어촌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가나 인신매매 피해아동의 IOM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평가, 2005
- Trata Internacional de Mujeres para la Industria del Sexo en el Perú (also available in English), Evaluación Externa Proyecto, OIM, por A. Ludeña, Mayo 2005
페루 내 성매매 여성들의 인신매매(영어 자료 열람 가능), 2005
-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Mass Information Activities
대중 정보활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 방법론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Project for the Return and Reintegration of Trafficked and Other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between Selected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2003
메콩지역 선별국 간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른 취약 여성, 아동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IOM 프로젝트에 대한 감찰국의 일반 평가, 2003
- Evaluation IOM Regional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the West Balkans, SIDA 2003
발칸서부지역의 IOM 지역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IDA 2003
- Evaluation of the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Moldova, SDC/IOM 2003
몰도바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DC/IOM 2003
- Evaluat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Kyrgyzsta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 Combating Trafficking and Smuggling of Human Beings, A. Rysalievа 2003
행동 계획 실행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기술적 원조에 대한 평가 – 인신매매와 밀입국 퇴치, A. Rysalievа 2003
- IOM MIC Evaluation of Project for Awareness Raising and Information Strategy on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200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 향상과 정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IOM MIC의 평가, 2002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Information Programme in the Philippines, 1999
필리핀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관의 일반 평가, 1999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IOM Public Information Programmes, 1999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관의 일반 평가, 1999

미주기구 소속 미주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ttp://www.oas.org/cim/>)

- In Modern Bondage: Sex Trafficking in the Americas: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근대적 구속: 미주의 성 인신매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국가

런던 위생 및 열대의과대학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LSHTM)

•The Health Risks and Consequenc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Adolescents,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2003 (<http://www.lshtm.ac.uk/hpu/docs/traffickingfinal.pdf>)
인신매매가 여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과 결과,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국제 비준서 전문 출처

인신매매 방지와 근절에 관한 브뤼셀 선언
Brussels Declara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2)
<http://www.belgium.iom.int/STOPConference/Conference%20Papers/brudeclaration.pdf>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Initial Plan of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2002-2003)
http://www.unodc.org/pdf/crime/trafficking/Minimum_Plano_CEDEAO.pdf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http://www2.ohchr.org/english/law/cerd.htm>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escr.htm>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18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82>

유럽안보협력기구,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3)
<http://osce.org/pc/42708>

동남아시아협력연합,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협약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http://www.saarc-sec.org/userfiles/conv-trafficng.pdf>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www.unicef.org/cr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2002)
<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ffickingen.pdf>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on Trafficking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http://www.un.org/en/documents/udhr>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 <http://www.coe.int/>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http://www.ecpat.net/EL/index.asp>

European Union Summaries of Legislation,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index_en.htm

Freedom Network, <http://www.freedomnetworkusa.org/>

Fundación ESPERANZA, <http://www.fundacionesperanza.org.co/>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http://www.gaatw.org/>

HumanTrafficking.org, <http://www.humantrafficking.org>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http://www.icmc.net>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http://www.icmpd.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www.iom.int>

La Strada – Prevention of Traffic in Women, <http://www.strada.cz>

Legislation Online, <http://www.legislationonline.org>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www.osce.org>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within OSCE), <http://www.osce.org/odi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ink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ttp://www.ohchr.org/EN/Pages/WelcomePage.aspx>

The Protection Project, <http://www.protectionproject.org>

Save the Children, <http://www.savethechildren.net/alliance/index.htm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www.unicef.org>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ttp://www.unwomen.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www.unodc.or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http://www.state.gov/g/tip/>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www.state.gov/g/tip/rls/tiprpt/2004/>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

NOTES:

[illegible]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